



독일 법률서비스법 제정

I. 개정 법률

명칭	법률자문법 (Rechtsberatungsgesetz)
약칭	RBerG
제정일	1935년 12월 13일 제정,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
개정일	2002년 6월 21일 개정
성격	연방법

II. 개정 배경과 진행경과

1. 개정 배경

독일에서 법률자문은 현행 법률 자문법(Rechtsberatungsgesetz: RBerG)과 이 법률 수행에 필요한 5개의 부속 규정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증인 외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특정인들만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

현행 법률 자문법이 변호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고 있으며, 국민을 지나치게 간섭하여 이타적 자선적 의도의 법률자문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법률자문'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Definition)가 없어 변

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허용된 법률자문의 범위와 허용되지 않은 자문의 범위 간 구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 개정 목적

현행 법률 자문법(Rechtsberatungsgesetz: RBerG)을 법률서비스법(Rechtsdienstleistungsgesetz: RDG)으로 대체하여 이 부문의 현대화를 시도한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모든 직업군에게 법률서비스를 부수서비스(Nebenleistung)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가(Volljuristen)의 감독 하의 무보수(unentgeltlich) 법률자문도 허용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개정 입법 진행경과

2004. 09. 06	법무부가 법률자문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초안(Diskussionsentwurf) 제시(관련 협회는 2004년 11월 19일까지 초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음)
2005. 04. 15	법무부의 법률자문개혁을 위한 초안 마련
2006. 08. 23	정부의 법률자문법 개정안 확정
2008. 중순 예정	의회의 동기가 필요치 않은 법률의 형태로 효력 발생

III. 주요 내용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관련한 독점권을 완화시키고, 비 법률인도 제한적으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포괄적인 법률자문(umfassende Rechtsdienstleistungsbefugnis)은 변호사가 함

포괄적인 법률자문(umfassende Rechtsrat)은 1, 2차 국가고시를 합격한 자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독립성, 신중성, 의뢰인 이익의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포괄적인 법률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문대학교 졸업자(Fachhochschulabsolventen)나 1차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포괄적 법률자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 법안은 애초 행정기관 또는 기업에서의 고용(비독립적인 활동)을 목표로 전문대학교(Fachhochschule)에서 교육받은 디플롬 법률가(특히 Diplom-Wirtschaftsjuristen: 전문대학에서 경제 경영 부문 관련 법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독립적 활동을

바란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즉, 법률 서비스(Rechtsdienstleistung)를 새롭게 정의하고, 허용 부수서비스(zulaessige Nebenleistung)을 확대하며, 직업상의 협력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디플롬 법률가(Diplom-Juristen)와 변호사에게 새로운 활동영역을 열어주고 있다.

2. 법률서비스법은 재판외 부분(aussergerichtliche Bereich)에 대해 적용됨

현행 법률자문법에 따르면 타인의 법적 문제의 처리는 법률의 허가사항이며, 변호사 혹은 법률 자문이 허용된 특정인들(세무사 등)에 의해서만 법적 사안들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행 법률은 법률자문(Rechtsberatung), 법률지도(Rechtsbetreuung), 법률처리(Rechtsbesorgung) 등과 같은 용어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제정 예정인 법률서비스법(Rechtsdienstleistungsgesetz: RDG)에서는 이 다양한 용어들을 법률서비스(Rechtsdienstleistung)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는 “특별한 법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타인의 구체적 사안에 관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Rechtsdienstleistung ist jede Taetigkeit in konkreten fremden Angelegenheiten, sobald sie eine besondere rechtliche Pruefung des Einzelfalls erfordert.”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순수한 법 응용 사안(Fälle echter Rechtsanwendung)만이 전적인 변호사의 소관이다(즉, 다른 사안들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

탐색(Auffinden), 해독(Lektuere), 법규범의 재연(Wiedergabe)과 법 규범의 단순한 도식적 사용(schematische Anwendung) 등과 같은 행위는 법률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다. 즉, 법적 배경의 일반적 해

명, 간단한 요구권의 관철, 계약체결·해지에의 참여 등은 법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포괄적(umfassend)이거나 심오한(besonders tiefgehend) 법률적 검토만이 법률서비스인 것은 아니다. 간단한 사실관계(Sachverhalt)의 법률적 검토도 이미 법률서비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행위가 법률서비스 법에 근거한 허용되는 부수서비스(zulässige Nebenleistung)일 경우 관련된 법률적 검토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Nichtanwälte)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포괄적 법률자문을 제외한 법률서비스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모든 직업단체가 법률서비스를 부수서비스(Nebenleistung)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

법률서비스법(RDG)은 변화된 경제생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타 직업활동과 관련해서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법률서비스가 부수업무로서 직업영역(Berufstätigkeitsfelder), 업무영역(Tätigkeitsfelder)에 속할 때, 또는 주업무(Haupttätigkeit)와 연관된 의무의 이행에 속할 때에는 항상 법률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예: 경영학 대학졸업자 또는 경제법률가가 하는 개발 또는 파산자문, 건축법이나 건축에서 비롯되는 결함책임 문제에 관한 건축가의 자문, 재산 또는 기업의 후계자 문제와 관련한 은행의 자문, 상속입증 신청서 준비에 상속평가자의 참여 등).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 없이는 다른 활동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건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법률서비스가 자기의 직업에서 계약의무 이행에 속하는 부수업무(Nebenleistung)라는 사실로서 충분하다.

즉, 법률서비스는 그 비중이나 중요성에 있어서 해당 직업의 업무활동에서 중심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직업영역(Berufsbild)에는 속해야 한다.

이번 법률초안은 법적 명확성을 위해 처음부터 항상 허용되는 부수업무(stets zulässige Nebenleistung)의 구체적인 예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언자가 은행이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위임한 유언장 집행사안, 기업자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금에 관한 자문(Fördermittelberatung) 등이 이에 속한다. 법안의 이 내용은 독일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내용 - 즉, 방금 열거한 활동들은 허용절차 없이 허가된 활동이라는 - 과도 일치하고 있다.

법안은 어떤 법률서비스가 직업(예: 기업자문)의 부수업무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판결(Rechtssprechung)에 따르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활동의 범위, 내용, 법률자문을 구하는 자에게 법률자문이 가지는 의미, 변호사의 포괄적인 법률 교육이 필요한 지 또는 변호사의 의무적인 배척이 필요한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률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충분한 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4. 변호사와의 협력 허용

법률서비스가 단순한 부수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 단일창구(즉, 변호사)를 통해 제공된다. 이것은 경제계와 의뢰인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이 밖에 이번 초안은 변호사에게 새로운 활동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법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 있다(예: 허가 의무가 있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법상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건축가는 변호사를 고용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기업 자문인·중재인·건축가·의사 등)들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은 이러한 환경에서 변호사가 ‘독립적’이며 ‘자기책임’ 하에 일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법률가(Unternehmensjuristen)들의 새로운 활동영역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은행은 고객에 대한 포괄적 법률서비스를 고용변호사(Syndikusanwalt)를 통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무상(unentgeltliche) 법률서비스 제공이 허용됨

법률서비스법(Rechtsdienstleistungsgesetz) 제6조에 따르면 앞으로 무상 법률서비스 제공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범위는 가족과 친구 범위 내에서의 법률 자문과 이타적·자선적 목적의 법률자문이 있다.

새 법안에서의 무상(Unentgeltlichkeit)의 개념은 민법에서의 무상 개념보다 협의로 정의된다. 무료서비스 제공은 그것이 유상(Entgeltlichkeit)에 근거한 사업과 연관되는 한 법률서비스법상의 무상이 아니다.

협회나 사회 복지단체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문제에 관한 직업교육을 받은(juristisch qualifiziert) 사람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감독하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장에서 법률자문하는 사람은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긴급 시에는 감독자의 특별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격

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무상자문은 금지된다.

6. 모든 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법률자문(rechtliche Beratung)이 허용됨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조합이나 이에 유사한 단체만이 협회회원들에게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할 자격이 있다(예: 노동조합, 사용자 조합, 주택·토지·세입자 조합 등).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단체(자동차 클럽도 포함)는 원칙적으로 그 회원들에게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 물론 법률서비스 제공이 해당 단체나 협회설립의 주목적(Hauptzweck)이 아니어야 한다.

단체나 협회의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자문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법률문제에 관한 직업교육을 받은(juristisch qualifiziert) 사람이 자문에 참여하도록 하며, 해당단체는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인적(personell) 측면이나 재정상(finanziell), 전문성(sachlich) 측면에서 조건을 적절하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이용 장기간 법률자문을 하는 협회에 대해서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중지시킨다.

7. 법정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들은 서로 조화시킴

법률자문법과는 달리 법률서비스법은 소송 외(aussergerichtliche) 법률서비스에 국한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소송절차법규(민사, 노동, 사회보장, 행정, 금융관련소송)는 누가 누구를 어떤 소송에서 변호할 수 있는지를 ‘관련소송규정’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구난방인 개별 소송규정들을 가능하면 서로 조정 일치시킬 예정이다.

민사, 노동, 사회보장, 행정, 금융재판에서의 변호

권한에 관한 한 소송의 부분에 대해서 취해진 정도의 규제완화는 없다. 연방법원, 대다수 항소심, 주법정에서의 민사소송, 가정법 소송 등 특정 법정관련 변호업무는 변호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현행법상 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이 밖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스스로 변론할 지 아니면 전문적인 변호인을 내세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적인 유상(entgeltlich)변호는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직업적으로 타인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의뢰인보호를 위해서 특정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때문에 새 법률안은 변호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변호 외에 근본적으로 소송당사자가 고용한 사람, 소송당사자의 가족 구성원, 무상 법률전문가(Volljuristen)만이 변호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 변호인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현행법과는 달리 앞으로 필요한 경우 새 규정에 따라 법정에 의해 변론 시 보조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세법 사안에 대해서는 세법자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변론권한을 가진다. 이미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 협회, 노동조합, 사회복지단체, 연금자문가의 변론 권한 역시 새 법안에서 인정된다. 노동법관련 소송 건에서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의 변론권한은 연방법원에서의 변호권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IV. 법률자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법률 자문의 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법률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법률 자문 시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켜 시대에 부응하도록 한다.

오 윤 섭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